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해설

2022 핵심실무 지방세

전동훈 · 최선재 공저

부록2

1. 감면대상사업	2
2. 외국인투자비율의 범위	3
3. 사업개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7
4. 증자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14
5. 사후관리 및 추징	27
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절차 등	30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2022 핵심실무 지방세 부록



1. 감면대상사업(지특법 § 78의 3 ①, 조특법 § 121의 2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감면하는바,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 1)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미합중국화폐 2백만달러) 이상일 것
-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 2, 제2호의 8, 제121조의 8 제1항 또는 제121조의 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 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2)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 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8.12.31.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4)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8.12.31.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 ③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④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8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⑥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⑦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⑨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⑩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⑪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외국인투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함)
 -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으로 한정)
 -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2. 외국인투자비율의 범위(지특법 § 78의 3 ⑥)

1) 의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그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내국법인("신설법인"이라 함)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외국투자가"라 함)가 2002.12.31.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12.31.까지 출자 전환된 분으로 한정)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된 때에는 다음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지특령 §38의 2 ②).

-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등"이라 함)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봄)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외국법인등”이라 함)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함)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2)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라 함)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기업
 -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3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등”이라 함)의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법 제78조의 3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대한민국국민등(“대한민국국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78조의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2) 법 제78조의 3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인 법인(“주주법인”이라 함)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해당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함)
-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지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비율 적용(행자부 세정 13430-715, 2001.6.2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비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니 지방세과세 등 운영에 차질없기 바람.

당 초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비율은 총자본금에 대한 외국인 자본금비율로 적용함(행자부 세정 13407-495, 2000.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외국인 자본금비율로 함.

2) 외국인투자의 범위와 외국인투자비율 산정기준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일,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도록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로서 조세감면결정서상의 투자 신고금액은 실제 외국인투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감면결정서상의 모든 투자신고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외국인 투자비율의 산정기준일과 투자액 범위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결정서상 투자신고금액」을 투자금액에 포함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는지?

(1)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증자시 외국투자가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이다. 그러므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행자부 세정 13407-495, 2000.4.10. 참조).

(2) 이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액에 「감면결정서상 투자신고금액」을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서 소유하는 주식일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이 발행되어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나 향후 투자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②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 6 제1항의 규정이서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산의 변동을 의미하고 있어서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투자가 발생되는 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01 외국인투자비율의 적용(행안부 지방세운영과-3384, 2011.7.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사업 등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재산세 감면(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특례제도임을 비추어볼 때 재산세의 감면범위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해석함.

02 외국인투자비율의 범위

- (1) 자본금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 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2중5038, 2012.4.27.).
- (2) “외국인투자비율”은 당해 법인의 자본금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유한 지분을 의미하는 것임(조심 2012중0051, 2012.6.27.).
- (3)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에 수도권지역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에 적용될 조세감면비율은 최초 외국인투자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상증자 후에 외국인투자금액만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총자본금에 대한 외국인증자자본금의 비율로 적용함(행자부 세정 13407-495, 2000.4.10.).

03 외투법인에 대한 감면(행자부 세정 13407-673, 2001.6.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 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외국인 투자비율, 즉 총 자본금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 자본금의 비율로 봄이 타당함.

3)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비율의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세 등을 감면시에는 우선적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산정한 경우 그 다음 단계로 당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비율은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면여하에 관계없이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전액 감면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감면을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감면비율(전액감면, 50% 감면 등)과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취득세 감면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다음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고 다시 여기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감면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비록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비율이 “0”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감면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감면비율을 초기에 100%, 그 후 50%를 각각 적용한 다음 감면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증자하는 경우 종전의 외국인투자누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조특령 §116 ⑥).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 장소의 사업장을 둔 경우라도 각 사업장별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간이 경과되면 재산세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증자를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기왕에 감면기간이 종료된 부동산은 감면을 배제하더라도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1) 신규사업개시에 따른 감면(지특법 §78의 3 ①, 조특법 §121의 2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2022. 12.31. 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구 분	취득세, 재산세(토지분 제외)	토지분 재산세
취득 후 5년간	전액 감면	전액 과표공제
5년 후 2년간	50% 감면	50% 과표공제

01 투자진흥지구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조심 2019지2561, 2019.12.10.)

①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지정·고시하여야하고 여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사업(생점객실)의 부속토지인 생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② 생점토지의 경우 OOO투자진흥지구 내 감면대상 사업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된 것으로 여기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따른 취득세 추징 규정인 조특법 제121조의 1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음.

02 제주도세감면조례상 직접 사용과 감면범위(조심 2019지0569, 2019.12.10.)

제주도세조례에서 규정하는 '해당 지구로 입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자인 입주기업'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해당 지구 등에서 기획·금융·설계·마케팅·임대·분양 등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로 보이고, 또한 국제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한 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 힘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거나 임대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2) 사업개시 전 감면(지특법 § 78의 3 ②, 조특법 § 121의 2 ⑤)

2022.12.31.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따라서 재산세의 경우 감면기간과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토지분 외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취득 후 5년간	전액 감면	전액 과표공제
5년 후 2년간	50% 감면	50% 과표공제

3) 사업양수방식 등에 따른 감면(지특법 § 78의 3 ③)

(1)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사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를 말한다.

(2) 감면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방식(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2. 2022.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4) 소수비율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배제(지특법 § 78의 3 ④, 조특법 § 121의 2 ⑪)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사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가목 2),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아래의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등”이라 함)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봄)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외국법인등”이라 함)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또는 대한민국 법인(“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함)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2)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기업
 -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여기서 지방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 2부터 제121조의 4까지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2)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이 경우 주식 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 (1)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주주법인”이라 함)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함)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 (2)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 (3)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 (4) 「(1)」 내지 「(3)」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 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조특법 § 121의 2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세목별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감면 대상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제공할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취득세는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부동산의 범위에는 지목변경, 개수 등과 같은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포함하여야 한다. 재산세 감면범위는 그 과세대상이 토지, 주택, 건축물에 한정한다.

사례

01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감면대상 부동산(조심 2018지0342, 2018.5.28.)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영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로서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3.8.28.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세감면 결정 통보(대외경제총괄과-1544)에 따르면 「반도체 後공정(패키징·테스트) 및 R&D 시설과 관련된 공장 신설」(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업종분류번호 26111)에 한해 감면대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은 반도체 後공정(패키징·테스트) 제조 및 R&D를 위하여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에 임대하여 커피전문점, 24시간 편의점 및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거나 제조사설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제조업의 생산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부동산임대업(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업종분류번호 68112)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수익금 전액이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는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보기는 어려움.

0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적용

- (1) 기존 외국인 투자가 있었던 기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에 경제자유구역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조업의 미화 3천만불이상의 투자를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되는 새로운 투자로 보아야 할 것임.
- (2) 증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개시일은 조세감면 결정을 받고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3)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가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그 비율에 따라 결정 받은 신고서상의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 된 때의 비율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4)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라 함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유형 자산을 포함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보유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보유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산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조세감면 대상외국인 투자란 외국인 투자금을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장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된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기획재정부 재국조-89, 2009.3.4.)」고 해석하

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용을 외국인 투자금을 통해 상환한 경우라면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향후에 투자되는 외국인 투자 자본금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임.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분경리의 취지는 외국투자의 증자분 감면대상과 무관한 기존 자본금 비율 때문에 증자분에 관한 세액 감면비율이 변동되는 것을 사업별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세법 제113조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법인세와 소득세에만 조세감면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분경리를 할 때 인용 법령의 구분경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분경리에 관한 사항은 제5장에서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이외 취득세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에 모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세와 지방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2078, 2017.7.21.).

03 외투기업의 사업개시 전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산일(조심 2015지1527, 2016.5.1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5항 제1호에서 「사업개시일 전에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전에 취득한 생점건물 및 생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04 외국인 투자기업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감면 범위(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366, 2015.2.11.)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개시일의 기산일 판단에 있어 개별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사업개시일 기산일은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원제골프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동조 단서에서는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에 한정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조례 제27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1호 단서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회원제골프장을 감면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조례 제36조에서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의하여 감면 기간이 연장되는 기간 동안은 감면기간, 감면비율에 한정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05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대상 부동산 범위(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64, 2014.11.4.)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관광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종전 법인이 2006.6.30. 관광개발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체의 개발행위 없이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보유하던 중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상태에서 임야를 매각하였으며, 종전 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전혀 공여되지 않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는 종전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3지249, 2013.6.5.) 할 것임.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설립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국내 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사업용 재산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

06 기숙사에 대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조심 2013지0966, 2014.4.15.)

공장의 구외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 당해 시설이 제조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춘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비록 공장구내에 기숙사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영상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공장구외의 기숙사가 공장구내의 제조시설 등과 연계되어 제조활동에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관련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07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조심 2012지0768, 2014.4.8.)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로서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08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조심 2013지0546, 2013.12.17.)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재산을 취득·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당해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신탁법인의 경우 직접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은 수탁법인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신탁법인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신탁법인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신탁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건물이 신탁재산에 편입되었다는 사유로 소급하여 당초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를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09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범위 및 감면사업장과 안분기준(행안부 지방세운영과-3384, 2011.7.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사업 등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재산세 감면(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특례제도임을 비추어볼 때 재산세의 감면범위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대상세액은 감면대상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생산시설 등의 사업장은 각 특성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므로 감면대상 재산부문의 세액산출을 위한 감면비율의 결정 또한 그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감면사업장과 기타사업장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의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사업장의 재산세 과표」를 「총사업장의 재산세 과표」로 나누어 산정하고,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의 감면비율 산정방식(감면사업 소득÷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지방세운영과-4562호, 2009.10.28. 참조).

10 지방세감면대상인 신고사업의 범위(행안부 지방세운영-1210, 2011.3.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만을 한정한다 할 것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80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무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제출되는 조세감면신청서류는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로서 조세감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조세감면신청서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한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만을 한정함.

11 외투기업의 공장구외 사업장에 대한 감면적용(행안부 지방세운영-1802, 2008.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공장 밖의 사무소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임.

12 공장구역 내 기숙사에 대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감심-2006-158, 2006.12.28.)

○○공장이 있는 ○○공단의 경계지역 인근에 소재하고 있고 공장구역 내에는 기숙사를 지을 만한 공간이 없으며 생산직 직원은 1일 3교대로 근무해야 하므로 심야근무조는 일시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거주자의 대부분이 나이 어린(기숙사 거주자의 98%가 25세 이하임) 생산직 직원들임에 비추어 단체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숙사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이 각각의 거처에서 별도로 사는 경우에 비해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할 것임. 한편 청구인의 사세확장으로 늘어나는 종업원의 기숙사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차원뿐 아니라 효과적인 생산현장 투입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 사업과 연관성이 크다 할 것임. 더욱이 건물은 기숙사 용도(1실 3명 거주)로 지었기 때문에 내부를 대수선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인에게 타용도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제공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할 것임.

6) 기한후 감면신청과 감면특례(지특법 § 78의 3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납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지특법 제78조의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4. 증자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지특법 §78의 3 ⑦ · ⑧, 조특법 §121의 4)

1) 감면적용 대상(지특법 § 78의 3 ⑦, 조특법 §121의 4)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본다. 다만, 일정 기준(제78조의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8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특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과 관계된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이 경우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한다.

2) 증자시 외국인투자비율의 산정(지특법 § 78의 3 ⑧)

(1)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외국인투자비율산정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 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지특법 제78조의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증자분사업”이라 함)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조특법 §121의 4 ④ 참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함)에 대해 법 제78조의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78조의 3 제7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함)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 (2) 법 제78조의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해당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text{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 \text{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 \times \frac{\text{새로 취득 · 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text{재산세 감면대상세액}} \\ \text{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그러나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유상감자후 증자시 감면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유상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증자분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3) 증자시 외국인투자비율의 산정기준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1.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조특령 §116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지특법 제78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조특법 §121의 4 ①). 따라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그런데 증자하는 경우로서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증자를 하는 경우와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증자를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감면기간이 경과된 투자액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즉,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둘째, 외국인투자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인 것이다. 외국인투자비율의 정의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로 정의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실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자본금중에서 외국인투자금액을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조특령 §116 ⑥). 또한 감면기간 경과되기 이전에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액과 이번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증자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범위

(1)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액 산정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이후에 수차례 증자를 하는 경우에 각 증자시점마다 사업개시일로 보는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증자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일당시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단순히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감면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각의 증자등기일 이후 감면기간이 도과되지 하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 총감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지특법 제78조의3 제7항의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78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당해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함께 있어서 그 지분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감면기산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예시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과 같이 사업개시일(20×1)투자가 된 경우 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비율을 산정하면?

(단위 : 억원, %)

연도별	총 자본금	외국인 투자액	증자액		외투 비율	감면비율(%)				감면 금액
			내국인	외국인		계	100	50	0	
20×1	1000	600			60	60	60			600
20×2			—	—	60	60	60			600
20×3			—	—	60	60	60			600
20×4	1500	900	200	300	60	60	60			600
20×5			—	—	60	60	60			600
20×6			—	—	60			30		600
			—	—	60		60			300
20×7			—	—	60			30		600
			—	—	60		60			300
제1차 부동산 취득(1,000억원)										
	2000	1,400	—	500	70		70			500
20×8			—	—	70				0	600
			—	—	70			35		300
			—	—	70		70			500
20×9			—	—	70				0	600
			—	—	70			35		300
			—	—	70		70			300
제2차 부동산 취득(600억원)										

이와 같이 당해 증자분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각각 5년간을 100%를 적용하고 그 후 2년간을 5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차례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상기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투자비율의 산정은 각각 사업연도마다 총자본금 중에서 외국인투자금을 나눈 값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20×6의 경우에는 60%(900/1,500억원)가 되나 감면비율은 최초투자분(20×1년의 600억원)은 5년이 경과되어 50% 감면이 되고, 증자분(20×6년의 300억원)만 100%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제1차 부동산 취득(1,000억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비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외투기업의 취득세액 산출 : $1,000\text{억원} \times 4\% = 40\text{억원}$
- 외투기업의 투자비율 산정 : $900\text{억원} / 1,500\text{억원} = 60\%$
- 감면율 적용 : 600억원은 50%, 300억원은 100% 적용
- 감면액 산정 : $40\text{억원} \times 60\% \times (600 \times 50\% + 300 \times 100\%) / 1,500$
 $= 24\text{억원} \times (300 + 300) / 1500$
 $= 24\text{억원} \times 40\% = 9.6\text{억원}$

제2차 부동산 취득(600억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비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외투기업의 취득세액 산출 : $600\text{억원} \times 4\% = 24\text{억원}$
- 외투기업의 투자비율 산정 : $1400\text{억원} / 2,000\text{억원} = 70\%$
- 감면율 적용 : 600억원은 0%, 300억원은 50%, 500억원은 100% 적용
- 감면액 산정 : $24\text{억원} \times 70\% \times (600 \times 0\% + 300 \times 50\% + 500 \times 100\%) / 2,000$
 $= 24\text{억원} \times (0 + 150 + 500) / 2,000$
 $= 24\text{억원} \times 32.5\% = 7.8\text{억원}$

쟁점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감면계산 방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비율 계산 방법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

(1) 외국인기업의 증자자본금 중 일부에 대하여 감면배제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 후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취득세 등 감면대상 사업과 감면배제사업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감면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방세(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감면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비율산정기준과 함께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에 해당한다.

(갑설) 일반적인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text{감면비율} = \frac{(\text{증자 전 외국투자 자본금} \times \text{감면율}) + (\text{증자시 외국투자 자본금} \times \text{감면율})}{\text{사업연도 총자본금}} / \text{당해}$$

(을설)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 합병하는 경우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text{감면비율} = \frac{\frac{\text{증자 전} \times \text{감면율} + \text{증자} \times \text{감면율}}{\text{감면외자}}}{\text{총감면외자}} \times \frac{\frac{\text{증자 전} + \text{증자시}}{\text{외자}}}{\text{총자본금}}$$

(2) 각 산정방식별 감면비율 비교(부동산 취득전제)

연도별	총 자본금	외국인 투자액	증자액		외투 비율	감면비율(%)			
			내국인	외국인		계	100	50	0
20×1	6	6		6	100	50	—	50	
20×2	—	—	—	—	100	100	100		
20×3	34	34	—	34	100	100	100		

연도별	총 자본금	외국인 투자액	증자액		외투 비율	감면비율(%)			
			내국인	외국인		계	100	50	0
20×4	60	60	—	60	100	100	100		
20×5	—	—	—	—	100	100	100		
20×6	300	200	—	200	100	0	0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면비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6\text{억원} \times 50\%) + (94\text{억원} \times 100\%) + (200\text{억원} \times 0\%) \} / 300\text{억원} = 32.33\%$$

둘째,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6\text{억원} \times 50\%) + (94\text{억원} \times 100\%) + (200\text{억원} \times 0\%) \} / 300\text{억원} \times (100 + 200) / 300 = 32.33\%$$

이 경우에는 내국인의 투자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 감면비율이나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이 동일하지만 내국인의 투자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3)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산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외투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 현재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비율의 산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시점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 감면비율을 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투비율에 대한 감면율 적용기산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간은 100% 적용하고 그 후 2년간은 50%를 적용하여 감면하는바, 이 경우 감면판단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총자본금이 100억원이나 외국인투자액이 70억원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년이 되는 시점에 사업용 토지를 70억원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감면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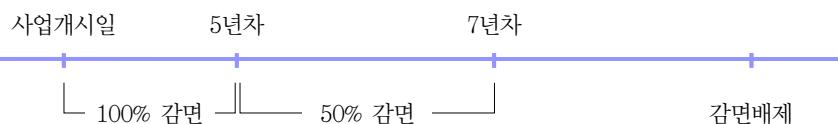
– 외투기업의 투자비율 산정 : 70억원 / 100억원 = 70%

– 감면기간의 적용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이므로 50%

– 감면액 산정 : 70억원 × 4% = 2,8억원

$$2.8\text{억원} \times 50\% \times 70\% = 7,700\text{만원}$$

토지분 재산세의 감면비율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공제대상금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재산세 감면 세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2)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 부동산에 대한 감면적용

증자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비율의 적용은 지특법 제78조의3 제7항의 규정에서

는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함에 있어서 그 지분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감면기산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가지 감면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① 납세의무성일현재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한 후 재산세 등 감면율(예 : 15년 이내 100%, 15년경과분 0%) ② 외국인 투자액(각각 증자분)에 대한 감면적용연수에 따른 각각 감면비율을 산정한 후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비율(이하 “외투감면비율”이라 함)」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증자분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성립일(재산세의 경우 매년 6.1. 현재)을 기준으로 각각의 증자액에 대하여 15년간은 100%, 그 후 15년경과분은 0%를 각각의 증자분마다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사업의 추가 감면특례(조특법 §121의 4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증자분사업”이라 함)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 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text{감면대상세액} \times \frac{\text{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text{새로 취득 · 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frac{\text{증자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여기서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는 관련 법에서 정의하는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그 범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여야 하고 그 가액은 납세의무성립일(재산세 매년 6.1 현재) 기준으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무형자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증자분사업 추가 감면비율」은 「증자분사업 사업용 고정자산 총가액 대비 증자등기일이 후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비율로 판단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자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외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기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증자분사업 추가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기간동안 감면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증자분사업에 대한 추가감면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감면범위

아래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① 신축건물(C)에 대한 재산세 감면적용기간과 감면 적용비율의 적용기준은?
- ② 2014년 이후부터 기존부동산(A+B)과 신축건물(C)에 대한 감면적용비율의 적용기준은?
- ③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관련 산정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④ 증자분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투기업감면율에 증자분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면세액에 증자분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1)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외국인투자회사가 연차별로 증자를 하였다고 전제를 하면 외국인투자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구분	감면기간	2014.6.1.	2015.6.1.	2016.6.1.	2017.6.1.
1998.12.28. 최초	1998.12.28.~2013.12.27.	0	0	0	0
2000.11.21. 증자	2000.11.21.~2015.11.20.	45.755%	45.755%	0%	0%
2011.11.16. 증자	2011.11.16.~2026.11.15.	1.375%	1.375%	1.375%	1.375%
2011.11.19. 증자	2011.11.19.~2026.11.18.	3.316%	3.316%	3.316%	3.316%
2013.11.09. 증자	2013.11.09.~2028.11.08.	12.370%	12.370%	12.370%	12.370%
계	감면비율	62.816%	62.816%	17.061%	17.061%

–최초 사업개시일 및 감면 적용일 : 1998.12.28. (토지A 25억, 건물B 10억)

–2011.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외화 : 3천만불 투자 후 토지(A)에 공장(C 15억) 신축

1998.12.28	2000.11.21	2011.11.16	2011.11.19	2013.11.9.	2015.11.28
사업개시일	증자(1)	증자(2)	증자(3)	증자(4)	공장신축(C)

※ 「○○시세감면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5년간 100%감면을 전제로 하고 고정자산가액은 토지A 25억, 건물B 10억, 공장C 15억원으로 가정함.

상기 예시의 의거 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은 각각의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 외투감면비율을 각각 산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내국인투자가 없으므로 전액 100%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구분	감면기간	누적 투자액	신규/ 증자액	외투기업감면비율				
				2013	2014	2015	2016	2017
1998.12.28. 최초	1998.12.28.~2013.12.27.	5,101,372	5,101,372	100	0	0	0	0
20×0.11.21. 1차증자	20×0.11.21.~20×5.11.20.	11,378,632	6,277,260	100	100	100	0	0
20×1.11.16. 2차증자	20×1.11.16.~20×6.11.15.	11,567,232	188,600	100	100	100	100	100
20×1.11.19. 3차증자	2011.11.19.~20×6.11.18.	12,022,192	454,960	100	100	100	100	100
20×3.11.09. 4차증자	2013.11.09.~20×8.11.08.	13,719,312	1,697,120	100	100	100	100	100
계	감면비율	13,719,312	13,719,312	100	62.816	62.816	17.061	17.061

상기 (예시)상의 감면대상 외투사업과 감면제외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되 감면제외사업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20×4 년에는 감면비율 62.816%가 되는 것이다.

(2) 증자시 각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과 관련하여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일을 기준으로 15년 이내인 경우 100%, 그 이후에는 0%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 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증자분사업”이라 함)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사유(조특령 §116의 6 ④ 참조)를 「모두 총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식(조특령 §116의 6 ④ 참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따라서 상기 예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6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라는 가정하에서 감면율(이하 “증자분 감면율”이라 함)은 $15/(25+10+15=50) = 30\%$ 를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A, B)」에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는 관련법에서 정의하는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그 범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하여야 하고 그 가액은 납세의무성립일(재산세 매년 6.1. 현재) 기준으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무형자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제공되는 유형+무형자산을 포함한 가액을 의미하고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3) 증자분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근거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4항 규정으로서 그 규정을 보면 그 전제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 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 제1항에 의거 외투기업의 감면비율을 먼저 계산한 다음 그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그 감면세액에 증자분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자분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동조 제1항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제공되는 것이라면 신규출자 고정자산가액 비율만큼 추가 감면하는 것이다.

사례

01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감면적용기준(조심 2019지2310, 2021.3.22.)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규정을 증자분의 경우 별도로 증자분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감면승인을 받지 못한 기존자본금을 포함한 총자본금을 감안하지 않고 감면승인을 받은 증자금에 대하여만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게 된다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승인을 받지 못한(내국인 투자포함) 지분도 추가로 감면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소유가 실제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외국인투자 지분만큼만 감면이 되어야 한다는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자금액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매 증자시마다 증자분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여 계속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증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함.

경제자유구역에는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

시문에서도 국제업무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테크노파크, 영종지구에 관세자유지역 조성 등의 산업유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내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고 볼 수는 없고, 토지의 이용계획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지역에 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 제3호의 산업단지에 대한 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건축물 등이 소재한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가 아닌 자유무역지구내에 소재한 토지이므로, 지특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02 외국인 투자 증자등기에 대한 감면(조심 2012지0591, 2015.12.4.)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의 2 등을 준용한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 설립시 최초 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인 같은 법 제121조의 2를 준용하여 자본금 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추가로 감면하겠다는 것이지 증자등기 자체를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121조의 2를 이 건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가가 소유주식을 매각한 시점인 2012. 1.19. 당시 추정 적용법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3항이나 그 이전 추정 적용법규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3항 각 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5항 및 제12항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자등기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추징할 근거규정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03두9374, 2005.9.29.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의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등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임.

0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기준(행안부 지방세운영-5345, 2009.12.17.)

○ 쟁점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4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의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면허세까지 감면할 수 있는지

○ 해석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 감면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최초 투자시 감면 규정인 같은 법 제121의 2를 준용하여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를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추가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증자분에 대한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감면대상이나, 법인등기(자본·출자액 증가 등)는 제외됨.

04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범위(행안부 지방세운영-4562, 2009.10.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인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음(재국조-93, 2004.2.13. 및 서면2팀-260, 2004.2.23.).

$$\text{감면비율} = \frac{\frac{\text{증자 전}}{\text{감면외자}} \times \text{감면율} + \frac{\text{증자}}{\text{감면외자}} \times \text{감면율}}{\text{총감면외자}} \times \frac{\frac{\text{증자 전}}{\text{외자}} + \frac{\text{증자시}}{\text{외자}}}{\text{총자본금}}$$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서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이외 지방세를 포함한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모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세와 지방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방법[감면비율 = {(증자 전 외국투자 자본금 × 감면율) + (증자시 외국투자 자본금 × 감면율)}/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에 의하여 감면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외자의 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기업이 채무를 통하여 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기업보다 감면비율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당초 감면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지방세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자본금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에 적용할 감면비율 계산방법

(단위 : 억원)

구 분	증자일자	증자 자본금		
		총 액	외국인투자 자본금	감면배제 자본금
최초투자	20×1. 8.16.	6	6	–
1차 증자	20×3. 6. 3.	34	34	–
2차 증자	20×4. 5.13.	60	60	–
3차 증자	20×6. 5.29.	200	200	200
합계		300	300	200

0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비율(행자부 세정-4491, 2007.11.1.)

조세감면대상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96년 1월 법인 설립 후 외국인투자비율이 계속 100%인 상태에서 4차 증자등기일 이후 공장을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당해 공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 산출은 각각의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증자시점별로 외국인투자비율 100%를 적용하되, 감면비율 산정은 각 증자시점(사업개시일)별로 감면비율 100% 또는 50% 적용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총자본금중 당해 증자분(외국인투자금액)별로 감면비율 및 적용기간을 산정하여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0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행자부 세정-3183, 2007.8.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전단,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기업의 1990년도 원시투자자본금이 300억원인 상태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200억원씩 증자하여 2007년 5월 고도기술수반사업 A를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물 A를, 고도기술수반사업 B를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물 B를 신축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비율은 $[(400/700) \times 100\%]$ 이 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9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서 지방세가 감면된 후 외국인투자가가 그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그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5) 구분경리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감면적용(조특령 §116의 6 ④)

조특령 제116조의 6 제5항(대통령령 제25211호)¹⁾에서 규정한 「조특법 제143조에 따른 구분경리²⁾」 규정이 지방세 감면 적용시에도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특령 제116조 제5항의 규정에서 법 제121조의 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 2 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령 제116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서 『법 제121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특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자분 조세 감면(지방세 포함)을 적용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도 마찬가지로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행안부 지방세운영-4562, 2009.10.28. 참조).

-
- 1) 조특법 제116조 ⑤ 법 제121조의 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 2 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 2)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특령 제136조(구분경리),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쟁점

증자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범위

외투기업(=당해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외투비율) 범위내에서 감면을 하는바 외투비율의 산정시점이 투자결정일인지 아니면 실제 투자한 날인지? 외투법인이 당초 투자후 추후 다시 증자를 하는 경우 증자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비율은?

(1) 외투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총 자본금 비율로 산정하게 되는 바 감면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외투비율에 따라 감면범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며(조특령 §116의 2 ⑭) 증자시에도 외투비율의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외투비율도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비율로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하며 이때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증자시 외국투자자자본금)/(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이다. 원칙적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행자부 세정 13407-495, 2000.4.10.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외투법인이 조세감면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에 대하여 지특법 (§112의 2 ⑤)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기재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외투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 증자시 감면과 비율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함에 있어서 그 지분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감면기산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가지 감면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①납세의무성립현재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한 후 재산세 등 감면율(10년 이내 100%, 그후 2년경과분 50%) ②외국인 투자액(각각 증자분)에 대한 감면적용연수에 따른 각각 감면비율을 산정한 후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비율(이하 “외투감면비율”이라 함)」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증자분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성립일(재산세의 경우 매년 6.1. 현재)을 기준으로 각각의 증자액에 대하여 10년간은 100%, 그후 5년경과분은 50%를 각각의 증자분마다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처분청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인 경우 100%, 그 이후 2년경과까지는 50%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감면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5. 사후관리 및 추징(지특법 § 78의 3 ⑫, 조특법 § 121의 5)

1) 추징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지특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상기의 추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각 호에 따른 추징하는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법 제78조의 3 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법 제78조의 3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양도일 또는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양도비율 또는 미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78조의 3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등록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78조의 3 제12항 제5호의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4. 법 제78조의 3 제12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을 각각 추징. 이 경우 추징하는 세액은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기 추징사유(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기 추징사유(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 중에 지특법 제78조의 3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

면기준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쟁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추징요건과 폐업의 범위

폐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업장별 기준인지 아니면 사업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1) (폐업의 범위) 폐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0)상 사실상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바,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한 경우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공장의 폐쇄」라 함은 공장에의 생산설비 등을 완전 철거하여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행자부 세정-4731, 2004.12.24.)이며 사업자체를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아닌 것인바, 「공장의 폐업」의 경우 사업자체를 영구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폐업의 판단기준) 법인자체를 기준으로 폐업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지만 지방세법상 달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를 법인입장에서 폐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장 폐쇄를 폐업으로 확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당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당해 사업이 폐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16지0433, 2016.7.25. 참조).

2) 추징배제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래의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③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④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한 경우
- ⑤ 그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
 - (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8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 3 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 3 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 3 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

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 (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 3 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바)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사)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등이 7일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다시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상기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절차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사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추징사유 판단(행안부 지방세운영과- 1852, 2010.5.3.)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되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B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점(대법원 2007다54276, 2008.1.13. 등 참조), 신탁관계는 내부적인 사유로 위 규정의 천재·지변·화재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27조 제1항에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건설·분양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자도 위탁자인 A사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 등기부상소유자(B신탁회사)와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자(B신탁회사)간의 일치를 요구하였던 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것을 전제로 사업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A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사의 경우 위 규정상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절차 등

1) 감면결정 효력(지특법 § 78의 3 ⑪)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지특법 제78조의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한다.

2) 감면신청절차(지특법 § 78의 3 ⑯, 조특법 § 121의 2 ⑥ · ⑧)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세 등을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함)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감면확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세 등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감면대상사업관련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쟁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전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적용대상인지?

20×4.9.2. 20×5.12.8. 20×6.7.21. 20×6.8.11. 20×6.9.21. 20×7.9.25.

연부취득계약 건축공사착공 투자지역지정 잔금지급 감면결정통보 과세예고

(1)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신고한 사업은 누구에게 신고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대상사업승인을 받는 등의 일련 과정을 볼 때 취득일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니다.

(2)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 결정은 절차적 사항으로 그 결정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

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의 위임결정 규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감면결정을 기재부장관이 하는 것은 결정권이 없는 자의 결정이므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설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기재부 등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두18582, 2014.2.13. 참조).

사례

01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과 조세감면결정요건(조심 2021지0854, 2021.12.22.)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제1호와 제2호 규정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취득과 보유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0.3.9.)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③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3 제2항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경우 제1호에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의 경우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라고 규정하여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재산만이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란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02 납입금액 연장시 감면추징기간 연장(조심 2013지0253, 2015.3.4.)

2005.10.2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고, 쟁점토지 및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은 2007.5.17.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7.6.25. 외국인 투자신고 및 구 000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감면결정통보를 받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외국인 투자신고일(2007.6.25.)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2.5.17. 000으로부터 외국인 투자금액의 당초 납입 이행을 2012.11.16.까지로 연장승인을 받고, 당해 연장된 이행기간 이내에 미화 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4.12.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5항 제4호와 그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됨.

03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사업과 추징(조심 2013지0407, 2013.9.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공장은 청구법인이 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인 조향장치부품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04 외국인투자기업에 감면 적용시한(조심 2012지0776, 2012.12.11.)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을 15년간으로

규정한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부칙에 의하면 이 조례는 2011.12.31.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2012년도에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건축물 등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1.13. 현재 적용되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2012.1.13. 현재 적용되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건축물 등의 취득은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0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적용(조심 2011지0257, 2011.11.3.)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국내기업에 투자를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고한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보유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에 새로이 취득·보유하는 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06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점주주의 감면(행자부 세정-3911, 2004.11.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귀사)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외국인투자가)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지 아니하다면 중자로 인한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07 골프회원권의 사업용 재산의 범위 포함 판단(행자부 세정-1683, 2004.6.22.)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공장시설(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등을 말하며 골프회원권은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08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판단(재경부 경총 41500-315, 2001.6.23.)

지방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비율 중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식상당부분을 제외한 비율을 의미함.